

제2534호
2017. 08. 2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조 려	
제1387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 고 시	
제2017-63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6
제2017-68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7
제2017-69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8
주식회사하나은행 고시 제2017-01 :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9
● 공 고	
제2017-612호 : 세운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3
제2017-613호 : 세운3-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5
제2017-618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1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87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의회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하 “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4.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3조(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에 따라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도시·건설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4. 보건·위생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
5.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6. 의회·지방자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7. 문화체육, 청소·환경, 기타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인된 자
8. 그 밖에 1호 내지 7호 분야에 의장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5조(임기) 임기는 주어진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명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해당 전문가를 신규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의회위원장은 의회위원회에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위원회의 자문위원 활용) ① 의회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조사·용역을 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분석·자문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향후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분야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장이 되며 의정팀장을 간사로 함
- 다. 위원의 자격(안 제4조)
- 라. 위원의 임기(안 제5조)
- 마.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바. 의회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활용(안 제7조)
- 사. 자문, 조사, 연구, 회의참석 등에 대한 실비보상(안 제8조)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 -63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인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461	551444.53	197737.91	451138.69	197667.03	서소문동 72-5
9462	551428.67	197654.01	451122.84	197583.11	서소문동 72-4
9463	551435.30	197636.10	451129.47	197565.20	서소문동 58-3
9464	551404.92	197618.04	451099.10	197547.13	서소문동 72-4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7년 7월 3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6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13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13-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13	2017.08.23.	퇴계로2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120-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길 36	2017.08.23.	세종대로1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69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길 36

연 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7길 49	2017.08.23.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7길 51	2017.08.23.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주식회사하나은행 고시 제2017-01호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453호(2013.12.26.),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112호(2014.12.2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43호(2014.05.28.)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67호(2016.06.22.)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64호(2014.08.13.) 관리처분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51호(2017.06.30.)로 공사완료 고시한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주식회사 하나은행(☎02-2002-23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3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함영주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 면 적 : 3,948.7㎡(대지면적 : 3,518.8㎡, 정비기반시설면적 : 429.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함영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66

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4. 08. 13

마. 공사완료 고시일 : 2017. 06. 30.

바. 이전고시 내역

○ 사업시행면적

종 전			확 정		
대지면적		3,518.8㎡	대지면적		3,518.8㎡
정비기반시설	공원	427.3㎡	정비기반시설	공원	429.9㎡
계		3,946.1㎡	계		3,948.7㎡

○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높이(층수) : 109.95m (지상26층/지하6층)
- 건축면적 : 1,915.15㎡
- 건축연면적 : 53,981.06㎡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함영주

- 토지

순 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전설정되는소유 권 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종목	권리자	
1	을지로1가 101-1	대지	3,518.8	주식회사 하나은행	-	-	대지
2	다동 193	공원	388.9	서울시 중구	-	-	무상귀속 공공용지
3	다동 194	공원	41.0	"	-	-	무상귀속 공공용지
계			3,948.7				사업시행 완료면적

- 건축시설

구 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비고
계	53,981.06	
토지등소유자	53,160.87	
체비지	-	
보류지	820.19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 구분지상권 1건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 분						비 고
			평 면 면 적 (㎡)	입체 면적 (㎡)	길이 (m)	폭 (m)	높이 (m, 지하)	최초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입구역	을지로1가 100-1	300.0	2,659.3	46.0	9.0	32.14~17.17 (해수면기준)	건고시232호 (‘77.12.06)	- 엘리베이터 부분 (17.17m~32.14m) - 연결통로 부분 (17.17m~27.40m) - 에스컬레이터, 계단부 (17.17m~30.42m) - 지하철 환풍구 (22.08m~29.60m)
세부 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을지로변 출입시설 일부, 환기구) - 지상 1층 : A=185.2, H=32.14~27.40(해수면기준) - 지하 1층 : A=300.0, H=27.40~17.17(해수면기준)								

사. 관련서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02-2002-2374)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

연번	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비고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교부 적수		비고
		지번	토지(m ²)		건물(m ²)				소유자	지번	토지(m ²)		건물(m2)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분양면적	징수교부		
1	(주)하나은행	을지로1가 101-1	대	3,518.80	S.R.C	사무실/판매	33,650.12		(주)하나은행	을지로1가 101-1	대	3,465.30	53,160.87			
		다동 51-2	대	48.30	벽돌조	근생시설	67.76									
		다동 51-14	대	379.00	벽돌조	근린시설	84.00									
소 계				3,946.10			33,801.88		환지 소계			3,465.30	53,160.87			
확정예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3,948.70					보류지(시행자)	을지로1가 101-1	대	53.50	820.19			
									서울시 중구	다동193	공원	388.90				
										다동194	공원	41.00				
										소 계		483.40				
총 계				3,948.70			33,801.88		총 계			3,948.70	53,981.06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 612호

세운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13호(2015.12.28.)로 사업시행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공람기간 : 2017.08.23. ~ 2017.09.06. (14일간)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3)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189-1번 일대
- 시행면적 : 4,661.2㎡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세운삼구역특수목적(주) 대표 선권수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8호(역삼동, 한신인테리어[24]) (☎ 2222-5000)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5.12.28.

바. 사업시행변경 내용

- 건축계획 변경

- 당초 : 지하7층/지상19층, 연면적 48,526.72㎡, 업무시설, 문화및잡화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변경 : 지하8/지상26층, 연51,443.04㎡, 공동주택(3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4. 관계도서 : 세운 3-1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613 호

세운3-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58호(2015.7.30.)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59호(2015.7.30.)로 사업시행인가된 세운3-4구역 및 세운3-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구역통합) 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역통합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공람기간 : 2017.08.23. ~ 2017.09.06. (14일간)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3)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3-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대
- 시행면적 : 7,032.4㎡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더 센터시티(주) 대표 권재웅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15, 130호(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 2222-5000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5.7.30.

바. 사업시행변경 내용

- 1)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변경
- 당초 : 대표자 선권수

· 변경 : 대표자 권재웅

2) 사업시행자 주소

· 당초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8호 (역삼동, 한신인터밸리)

· 변경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15, 130호(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3) 건축계획 변경

· 당초(세운3-4) : 지하7/지상19층, 연면적 51,557㎡,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당초(세운3-5) : 지하4/지상20층, 연면적 19,969㎡,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변경(세운3-4,5) : 지하8/지상27층, 연76,300㎡, 공동주택(6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4. 관계도서 : 세운 3-4,5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618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폐지이유

본 규정은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 5. 1.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15. 8. 11.자로 상위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규정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4755, FAX : 3396-8648 shi525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폐지훈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폐지 훈령안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 훈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